

[양식 제10호]

혼인 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인 당사자 (신고인)	성명	한글	*(성) / (명)			또는 서명	*(성) / (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② 부 모 (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⑤ 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사항									
⑦ 증인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또는 서명		후 견 인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⑨ 신고인 출석여부		남편(부)			아내(처)				
⑩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이 양식 제10호는 제3호제1절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0호의 양식에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보충하고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년 월 일		
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일부터 동거		
㉒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㉓ 최종 졸업학교	남편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㉔ 직업	남편 (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아내 (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④란 :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증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지재산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㉔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㉕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㉕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전문직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분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기계·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재학생·가사·무직 :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지재산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4.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6.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様式第 10 号]

婚姻届出書		(年 月 日)		※ 届出書の作成にあたっては裏面の記入方法を参照し、選択項目には「○」を付してください。				
区分		夫 (父)		妻 (母)				
① 婚姻当事者 届出姻	氏名	カナ	*(姓)/(名)		または署名	*(姓)/(名)		または署名
		漢字	(姓)/(名)			(姓)/(名)		
	本籍(漢字)		電話		本籍(漢字)		電話	
	生年月日							
	* 住民登録番号		-		-		-	
	* 登録基準地							
* 住所								
② 父母 養父母	父の氏名							
	住民登録番号		-		-		-	
	登録基準地							
	母の氏名							
	住民登録番号		-		-		-	
登録基準地								
③ 外国方式による婚姻成立日		年 月 日						
④ 氏・本籍の協議		子の氏・本籍を母の氏・本籍とする協議をしましたか？				はい <input type="checkbox"/> いいえ <input type="checkbox"/>		
⑤ 近親婚の有無		婚姻当事者は 8 親等以内の血族に当たりますか？				はい <input type="checkbox"/> いいえ <input type="checkbox"/>		
⑥ その他								
⑦ 証人 姻	氏名		または署名		住民登録番号		-	
	住所							
	氏名		または署名		住民登録番号		-	
	住所							
⑧ 同意者	夫	父	氏名	または署名	後見人	氏名	または署名	
		母	氏名	または署名		住民登録番号	-	
	妻	父	氏名	または署名	氏名	または署名		
		母	氏名	または署名	住民登録番号	-		
⑨ 届出人の出席有無		夫 (父)		妻 (母)				
⑩ 提出者		氏名		住民登録番号		-		

※ 他人の署名または印章を無断で使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により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より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印 (*) を付した項目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情報です。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に基づき、誠実に報告する義務がある人は動向調査の秘密は厳重に保護されますので、事実のとおりご記入ください。

※ 添付書類および婚姻当事者の国籍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情報です。

人口動向調査			
㉑ 実際の婚姻生活 開始日		年 月 日から同居	
㉒ 婚姻の種類	夫	妻	初婚 死別後の再婚 離婚後の再婚
㉓ 最終卒業校	夫	妻	初婚 死別後の再婚 離婚後の再婚
	(夫)	(妻)	学歴なし 小学校 中学校 高等学校 大学(校) 大学院以上
㉔ 職業	夫	妻	管理職 専門職 事務職 サー ビス職 販売職 農林漁業
	(夫)	(妻)	管理職 専門職 事務職 サービス職 販売職 農林漁業 技能職 設備・機械の操作および組立 単純 労務職 単純労務職 軍人 学生・家事・無職

記入方法

- ※ 登録基準地：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国籍を記入します。
※ 住民登録番号：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また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 ①・②欄および⑤・⑦欄は届出人全員が記入し、それ以外の欄（③・④・⑥・⑧）は該当する方のみ記入します。
※ 住民登録の転入届は、本家族関係登録の届出とは別に行う必要があります。
②欄：婚姻当事者が養子の場合、養父母の身上事項を記入します。
③欄：外国方式による婚姻証書謄本を提出する場合は、婚姻成立日を記入します。
④欄：「民法」第 781 条第 1 項ただし書に基づき、子の姓・本を母の姓・本とする合意がある場合は、その旨を表示します。
⑤欄：婚姻当事者が「民法」第 809 条第 1 項に定める近親婚に該当しないこと〔8 親等以内の血族（親養子の縁組前の血族を含む）〕を表示します。
⑥欄：下記の事項およ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 事実上の婚姻関係の存在確認に関する裁判に基づく婚姻届（当事者双方が生存している場合は、訴えを提起した者のみ届出可）の場合は、裁判所名および確定日
- 父母の婚姻により婚姻中の子の身分を取得した子がいる場合は、その子の氏名・登録基準地
⑦欄：証人は成年者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⑧欄：未成年者または被成年後見人（2018. 6. 30. までは禁治産者を含む）が婚姻する場合は、同意内容を記入します。
⑩欄：提出者（届出人が作成した届書を、届出人以外の者が提出する場合に限り記入）の氏名およ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受付担当公務員が身分証と照合〕
※ 以下の事項は、「統計法」第 24 条の 2 に基づき、統計庁が実施する人口動態調査です。
㊦欄：婚姻日とは関係なく、実際に夫婦として結婚（同居）生活を始めた日を記入します。
㊧欄：文部大臣が認めるすべ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記入します。各学校の在学者また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丸印（○）」を付けてください。＜例＞大学 3 年在学（中退）→ 高校に「丸印（○）」を付ける㊧欄：結婚当時の主な職業を基準に記入します。

管理者：政府・企業・団体、またはその内部部門の政策や活動を企画し、指揮・調整する職（公務・企業管理職など）
専門知識を生か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事務）
事務従事者：管理者・専門職および関連従事者を補助し、業務を推進（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
統計など従事者：公共安全、身辺警護、介護、医療補助、美容、婚約・葬儀、運送、レジャー、調理に関する業務
販売従事者：営業活動による商品・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店舗、公共の場所など）、商品の広告・宣伝
農業・畜産の従事者：作物の栽培・収穫、動物の繁殖・飼育、森林の育成・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
技能の従事者：製造業・建設業において、手作業や手工具で機械の据付・整備、製品の設備・機械の操作
および組立従事者：機械を操作して製品の生産・組立を行い、産業用機械・設備の操作や、輸送機・事務用機器など主に単純な手工具の使用や、単純で日常的かつ身体的な労力を要する業務
軍人：義務服務を含め、現在も軍人の身分にある場合（国防分野に雇用された民間人および予備役は除く）
学生・家事・無職：教育機関に在学して学業に専念している、専業主婦（主夫）である、または特定の職業がない場合

添付書類

- ※ 下記 1 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で電算により内容を確認できる場合、添付を省略できます。
- 婚姻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 各 1 通。
 - 婚姻同意書〔未成年者または被成年後見人（2018. 6. 30. までは禁治産者を含む）が婚姻する場合。ただし、届書の同意欄に記入し署名または押印した場合は例外〕および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被成年後見人の婚姻に成年後見人が同意する場合に限る）
 - 事実上の婚姻関係の存在確認に関する裁判が確定し、婚姻届を提出する場合は、当該裁判書の謄本および確定証明書を各 1 通提出します〔調停・和解成立の場合は、調停（和解）調書および送達証明書を各 1 通〕。
 - 婚姻届特例法による婚姻の場合は、審判書の謄本および確定証明書を 1 通提出します。
 - 事件本人が外国籍の場合
- 日本方式で婚姻する場合：外国人の婚姻成立要件具備証明書（中国籍の場合は未婚証明書）原本、およ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または在留カード等）写しを各 1 通
- 外国方式で婚姻した場合：婚姻証書謄本 1 通、およ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または在留カード等）写し 1 通
 - 「民法」第 781 条第 1 項ただし書に基づき、子の氏・本を母の氏・本とする協議をした場合は、その協議事実を証明する婚姻当事者の協議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 414 号 別紙 1 様式）を 1 通提出します。
 - 本人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 443 号による〕
 - 通常の場合
- 届出人が来庁する場合：届出人全員の本人確認書類
- 届出人が来庁せず、提出人が来庁する場合：提出人の本人確認書類、ならびに届出人全員の本人確認書類または署名の公証もしくは印鑑証明書（届出人の本人確認書類なしで届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書に押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
- 郵送提出の場合：届出人全員の署名公証または印鑑証明書（届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押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報告的婚姻届（証書謄本による婚姻届）
- 届出人が来庁する場合：本人確認書類
- 提出人が来庁する場合：提出人の本人確認書類
- 郵送提出の場合：届出人の本人確認書類の写し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は、7 項の②書類に加え、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併せて添付してください。
※ 事実上の婚姻関係の存在確認に関する裁判が確定し、婚姻届を提出する場合は、出席した届出人（訴え提起者）の本人確認をもって、欠席した届出人の本人確認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